



두엄누리회보 제44호

2007년2월28일

발행인: 김 상원 편집인: 손 이현 www.duem.or.kr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 국제빌딩 301호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제4 | 정기총회개최

제4회 정기총회가 대전 유성에서 80여명(위원장 제출회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일시 : 2007년 2월 13일 12:00

장소 :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토치홀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감사패 증정
5. 감사보고
6. 2006년도 사업 보고
7. 2006년도 결산 안 승인
8.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수지에 산안 승인
9. 이사회 위임 결의 안
10. 기타 사항의 식순대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기타 논의 사항에서는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내 유기질, 퇴비 등 양분이 자연 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아래 대형 퇴비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근지역 퇴비공장들과 마찰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에서도 정부지원으로 25억까지 지원되는 대형 공동 퇴비장 설립이 추진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료 공정규격 개정 사전 협의

지난 2월 5일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에서 비료공정규격 개정에 관한 사전 협의회가 있었다. 공정규격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에 대해 우리 협회 의견을 밝히고 그동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각계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놓고 정부측 의견도 들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은 비료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대책에 포함되어 업계나 학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표된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결과이다.

우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 대책 추진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비료분류체계 개편**

- 비료분류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하고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
 -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토양에 유기물 공급능력이 있는 비료는 유기질 비료로 분류

□ **퇴비 공정규격 개정**

- 퇴비의 주원료로 가축분을 사용할 경우 퇴비의 용기, 포장지에 “가축분 퇴비”로 표기 할 수 있도록 공정규격 개정
- 퇴비 수분함량 기준 완화

□ **액비(가축분뇨발효비료액)공정규격 개정**

- 악취없는 저농도 액비가 출현함에 따라 질소함유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액비 공정규격 개정(안)
 - (현행) 질소함유 최소량 0.3%→(개정) 고농도, 저농도로 세분 또는, 질소함유 최소량 하향 조정

□ **가축분 퇴. 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설정**

- 한국 실정에 맞는 객관적 부숙도 판정기준을 12월까지 확립하고 현장적용시험 추진('07.6)
 - 퇴비 : 농업과학기술원(미생물 산소소비량 측정법 활용)
 - 액비 : 축산연구소(암모니아 측정 등 악취분석법 활용)

이에 따라 진흥청이 각 시도. 시군 55기관, 도 농업기술원 8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111기관, 농과계 대학 7개 및 연구소 2기관, 비료업체 512개소 등 총 695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비료분류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무기질, 유기질비료 등 5종으로 분류⇒

243 (35.0%)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와 유기물보증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유기질비료로 분류⇒

232(33.4%)

유기질비료에 부산물비료포함 ⇒119(17.1%)
 현행유지 ⇒101(14.5%)
 우리협회 ⇒**개편에 찬성**
 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개편에 반대**

업체를 대상으로 한 퇴비 수분함량 기준 완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205개 업체 중 85개업체(41.4%)가 현행유지 내지는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수분규격완화가 58.6%로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조사업체수	규격강화 (45~50)	현행유지 (50이하)	규격완화 (55이하)	기타의견
205업체	13업체	72업체	112업체	규격폐지:3업체 60%이하:5업체
	6.3%	35.1%	54.6%	4%

우리협회 의견 ⇒수분규격 완화(55%이하)

시. 도를 포함한 조사에서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현행유지 (50%이하)	강화 (45%이하)	완화 (55%이하)	완화 (60%이하.폐지)	계
시도. 군	20	9	17	9	55
농업기술원. 센터	77	19	13	10	119
비료업체	174	68	132	138	512
연구소. 대학	5	0	4	0	9
계	276 (39.7%)	96 (13.8%)	165 (23.7%)	157 (22.6%)	695

가축분뇨발효비료(액)규격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구분	규제 불 필요	현행 보 다 세분 화 규제	현행 유 지	기타	계
시도. 군	8	35	12	0	55
농업 기술 원. 센터	22	86	11	0	119
비료업체	114	248	143	3	508
연구소.대 학	3	5	1	0	9
계	147 (21.3%)	374 (54.1%)	167 (24.2%)	3 (0.4%)	691

우리협회 의견 ⇒ **현행유지 내지는 세분화규제**

퇴비의 부속도 판정 추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았다.

구분	자 체 검 사 용 사 용	추 후 적 용	현행 유 지	기타	계
시도. 군	26	18	11	0	55
농업 기술 원. 센터	67	48	3	1	119
비료업체	210	116	182	4	512
연구소.대 학	5	2	2	0	9
계	308 (44.3%)	184 (26.5%)	198 (28.5%)	5 (0.7%)	695

우리협회 의견 ⇒ **일정기간 시범 적용 후 추가**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중 퇴비와 관련된 사업

농림부가 발표한 2007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
르면 현재 우리가 참여 하고 있는 유기질(퇴
비)비료 지원 사업 외에도 우리와 직 간접으

로 연관이 있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
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자
원화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
 - 가축분뇨 퇴·액비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 (가) 단독시설(축산농가)
-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
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
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 *공동퇴비장 가축 분뇨만을 이용해 퇴비
화 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퇴
비 생산 업체(영농조합법인)
-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원(25억원 내
외)할 수 있음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한도액 지원

(라) 액비저장조설치

(마) 액비유통센터

(바) 액비살포비 지원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 용자5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지방비
50%, 자부담 20%
- 액비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액비살포비지원 : 보조 50%, 지방비 50%

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목적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2003	2004	2005	
사업량	개소 1,500	645	34	63	
사업비	계	620,618	202,318	12,000	16,800
	보조	244,937	77,617	4,800	6,720
	국고용자	29,400	29,400	-	-
	지방비	220,353	53,033	4,800	6,720
	자담	125,928	42,268	2,400	3,360

구 분	2006	2007 (예산안)	2008이후	
사업량	78	40	640	
사업비	계	30,000	20,000	339,500
	보조	12,000	8,000	135,800
	국고용자	-	-	-
	지방비	12,000	8,000	135,800
	자담	6,000	4,000	67,900

◦ 지원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 ~

이 두가지 사업모두 퇴비화로 할 경우 신규로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배정된 금액도 부족하겠지만 기존의 업체를 이용하거나 공동참여 형태로 활용한다면 훨씬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경우 퇴비공장의 지원은 단지 내 유기물질의 순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0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 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므로 그 규모로 보아 단지 내에서 자가 사용하는 퇴비라 할지라도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경영 수지를 맞춰 운영을 하려다보면 막대한 돈이 투입된 퇴비공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이유는 기존 업체와의 경쟁에서 결코 유리 할 수 없으며 현재 퇴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어 보조금이 지원된 금액이하로는 도저히 생산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 지원금(상수원 보호지역 등)도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포당 700원에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퇴비 20kg/포 당 1,000원 내외가 되는데 새로 신설되어 퇴비를 생산하려면 도저히 그 금액 이하로는 좋은 퇴비를 생산해 낼 수 없을뿐더러 정부의 2중지원으로 지역내 갈등만 조장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사업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점을 잘 검토하여 단지 내에는 발효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후숙 장소로 사용할 창고만 구비하고 분뇨처리 및 1차 발효는 기존 퇴비업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각 해당 지역의 회원사는 이러한 점을 사업시행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